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41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이헌승 · 박덕흠 · 김선교
이성권 · 김상훈 · 최형두
엄태영 · 서명옥 · 박성훈
김정재 · 송석준 · 김재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이해관계인은”을 “,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행위 제재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부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 ----- ----- -----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행위 제재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하여야 한다.